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1554
------	------

2020. 6. 17.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5월 25일, 김정태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0. 6. 17.)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정태 의원)

1. 제안이유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9년 1월 지정된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금융산업 종사자, 혁신금융서비스 종사자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종사자 네트워킹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정의 추가 (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제4호, 같은 조제5호).
- 나.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국제행사(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제4호).
- 다.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

III.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과 운영, 혁신금융서비스(핀테크)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나.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현황

- 정부(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집적 도모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0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지역 일대를 금융 중심지(국제금융지구)로 지정 · 고시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3.98km^2)를 국제 금융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건립,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외국인 친화적인 글로벌 생활환경 조성,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국제금융지구 및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범위 >



- 또한, 금융산업 육성 추진계획의 수립, 금융중심지에서 활동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2015년 7월에 제정하여 시행 중임.
- 현재 서울국제금융센터에는 금융기관 57개 사와 금융지원기관 44개 사가 입주해 있으며, 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서울펀테크랩에는 70개 사(국내 46, 해외 24)가 입주해 있음.

다.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는 ‘혁신금융서비스’ ,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정의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개정안 관련 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 금융중심지"란 .. (생략) 2. "금융기관"이란 .. (생략).	1. "서울 금융중심지"란 .. (생략) 2. "금융기관"이란 .. (생략). 3. " <u>혁신금융서비스</u> "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u><신설></u>	
<u><신설></u>	4. " <u>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u> "란 「서울 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 중 주된 사업분야가 혁신금융서비스인 자를 의미한다.
<u><신설></u>	5. " <u>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u> "이란 시가 제1호의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의미한다.
3. "임시사무소"란 .. (생략)	6. "임시사무소"란 .. (생략)

- 안 제3호의 혁신금융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과 IT융합(Fin-Tech) 등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정의한 것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정의 규정(제2조제4호)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음.
- 안 제4호의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창업 7년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5호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은 서울핀테크랩과 금융 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등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이 안 제17조에 신설됨에 따라 이들 시설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임.

라. 교육훈련자금 지원 대상에서 ‘서울금융전문대학원’ 제외(안 제7조제2항)

- 안 제7조제2항 단서규정은 교육훈련자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서울시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교육훈련 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 서울시는 금융기관이 내국인을 신규 고용한 후 경영·금융전문 대학원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명당 6개월의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교육훈련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기준 및 한도>

항 목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한도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 사업용 설비의 설치 등 필요자금의 100분의 100이내 ※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지역본부는 기관당 100분의 25이내	기관당 10억원 이내 (거래소 및 지역본부는 25억원 이내)
신규고용자금	◦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월 보수액의 50/100)	기관당 2억원 이내
교육훈련자금	◦ 교육훈련인원 1명당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1명당 교육비의 50/100)	기관당 6천만원 이내

- 그러나 금융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조성 중인 서울금융전문대학원이 올해 9월 개원하면 운영기관(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이 교육경비 1천 2백만원 중 50%를 교육생들에게 지원하게 되어 교육훈련

자금의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하게 됨.

<서울금융전문대학원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2023년(4년 간) ※ '20년 하반기 개강 예정
- 사업위치 :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17층($3,061\text{m}^2$)
- 사업예산 : 4년 간 190억원(시비 100, 국비 9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
소 계	19,000	4,000	5,000	5,000	5,000
시 비	10,000	2,500	2,500	2,500	2,500
국 비	9,000	1,500	2,500	2,500	2,500

- 교육대상 : 금융회사 재직자, 핀테크 (예비)창업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등
- 교육과정 : 디지털금융 학위(80명/연) 및 비학위 과정(160명/연) 운영
- 교육경비 : 총 1,200만원(1인 기준), 국비 및 KAIST 50% 지원
- 운영기관 : KAIST 디지털금융 교육그룹(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2020. 3)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서울시가 지정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에는 교육훈련자금 지원을 배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예산의 중복지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마.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등 추진 사업 근거 규정 신설(안 제15조제1항제3호 · 제4호)

- 개정안은 금융산업 발전과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 창업자에 대한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서울국제금융 컨퍼런스¹⁾ 등의 국제회의 개최 사업에 대한 시행 근거 규정을

1) 국제금융도시 서울의 미래 성장방향을 모색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서울 유치를 위해 2006년부터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여 1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마련하고 있음.

- ICT 발전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 소비자의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핀테크가 금융산업 혁신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핀테크 창업자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를 지원(제3호)해 서울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 실제로 글로벌 핀테크 거래금액은 2017년 3조 6천 356억 달러에서 2023년 9조 8천 2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²⁾된다는 점에서 핀테크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유도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그동안 정책적 목적에서 추진해 온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제4호) 사업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서울 금융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환경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
- 다만, 사업 근거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를 2006년부터 지속해오다가 뒤늦게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2020년 현재 총 9회 개최됨.

2) 독일 시장조사 기관 스타티스타(2019).

바. ‘서울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근거 신설(안 제16조제2항)

- 안 제16조제2항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대학·연구기관 등에 지원하는 범위를 현행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이는 서울금융전문대학원 운영기관에 대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2021년도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임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확대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서울금융전문대학원이 핀테크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구심점이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가능하므로 서울금융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

사.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및 운영(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의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과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관련 규정>

현 행	개정안
<u><신 설></u>	<p><u>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u></p> <p><u>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u></p> <p><u>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u></p> <p><u>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u></p> <p><u>4. 그 밖에 시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u></p> <p><u>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p> <p><u>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p> <p><u>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u></p>

현 행	개정안
	<u>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은 현재 서울시가 조성 중이거나 운영 중인 다음의 시설에 해당됨.
 - 금융기관 서울사무소(제1호)는 주요 금융기관이 부산, 전주 등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의 금융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 입주기관 유치, ▶ 비즈니스 지원, ▶ 기업 간 교류 지원을 위한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임.
 -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제2호)는 국내외 금융 관련 창업자 · 투자자 · 종사자 간의 교류 활성화 목적으로 다기능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 네트워킹, ▶ 교육·컨설팅, ▶ 온라인 플랫폼, ▶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임.
 - 서울핀테크랩(제3호)은 ▶ 해외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³⁾ 프로그램 연계, ▶ 국내외 핀테크 기관, 투자사 네트워킹과 협업 지원, ▶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유망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임.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설치 근거를 조례상에 마련하는 것은

3) 창업자들을 선발하여 육성, 집중 지원하는 관리체계를 말함.

해당 시설의 조성과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 그 밖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2항),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등의 부과·징수(제3항),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4항), 등은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이용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향후 서울시가 임차한 사유재산에 추가적인 시설 조성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⁴⁾외에 ‘사용료’⁵⁾ 등을 함께 명시하여 세외수입 징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아.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민간위탁(안 제18조)

- 안 제18조는 안 제17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의 근거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여

4)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5) 사용료 :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비용을 절감하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음.

-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지원 등의 사무는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능률성을 활용할 경우 사업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상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 종합의견

-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만 10년이 되었지만, 국내 금융 중심지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인지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⁶⁾, 아시아 금융중심지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최근 5년간 국내 진입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정체되면서, 새로 진입하는 금융기관보다 철수하는 금융기관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⁷⁾
- 이에 정부는 핀테크 등과 같은 혁신금융서비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⁸⁾와 핀테크 육성을

6) 2019년 국제금융센터지수(GFCI)평가에서 서울이 36위, 부산이 43위를 기록하며 2016년 서울이 14위를 기록한 이후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음(금융위원회, 2020. 금융중심지 위상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연구).

7) 최근 3년간(2017~2019) 국내 외국계 금융기관의 진입은 17개, 철수가 23개로 철수 금융기관이 많은 상황임(2019.12월 기준, 금융감독원).

8)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

포함한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지난 5월 발표한 바 있음.[참고자료1]

- 개정안은 ▶ 혁신금융서비스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 지원(안 제15조),
▶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조성 및 운영(안 제18조)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울의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시켜주는 제도로,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으며, 정부도 지난 1월부터 시행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4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의자 : 김정태, 김경우, 김제리,
김희걸, 박순규, 양민규,
이광호, 이성배, 이호대,
임종국, 정재웅, 채인묵,
최웅식 의원(13명)

1. 제안이유

동북아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09년 1월 지정된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 서울사무소 및 금융산업 종사자, 혁신금융서비스 종사자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종사자 네트워킹 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혁신금융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정의 추가
(안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제4호, 같은 조제5호)
- 나.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한 국제행사(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제4호)
- 다.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 방식 ·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란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 중 주된 사업분야가 혁신금융서비스인 자를 의미한다.

5.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이란 시가 제1호의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의미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4. 시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

제16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을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로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20조(표창) 시장은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약)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 <u>혁신금융서비스</u> ”란 「 <u>금융혁신 지원 특별법</u> 」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 방식 ·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 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 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u><신 설></u>	4. “ <u>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u> ”란 「 <u>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u> 」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자 중 주된 사업분야가 혁신금융서비스인 자를 의미한다.
<u><신 설></u>	5. “ <u>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u> ”이란 시가 제1호의 서울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의미 한다.
3. ~ 8. (생 약)	6. ~ 11. (현행 제3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7조(교육훈련자금의 지원) ① (생	제7조(교육훈련자금의 지원) ① (현

략)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한한다. <단서 신설>

제1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서울 금융산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② (생 략)

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행과 같음)

② -----

-----. 단,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외한다.

제1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

4. 시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 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

제1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
다.

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
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
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
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
설
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
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금융산업을 육
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
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 ·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
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혁신금융서비
스 창업자 등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

	<p><u>영위원회의 구성 ·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u><신 설></u>	<p><u>제18조(관리 · 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民間에 위 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 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를 따른다.</u></p>
<u>제1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생략)</u>	<p><u>제1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현행 제17조와 같음)</u></p>
<u><신 설></u>	<p><u>제20조(표창) 시장은 금융산업 발전 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 대 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p>
<u>제18조(행정지원 등) (생략)</u>	<p><u>제21조(행정지원 등) (현행 제18조 와 같음)</u></p>
<u>제19조(시행규칙) (생략)</u>	<p><u>제22조(시행규칙) (현행 제19조와 같음)</u></p>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조제4항(운영위원회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제15조제3호 및 제4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예산을 기 편성하여 추진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단위 : 백만원)

조문	사업명	2020년 예산액
제15조제3호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4,910
제15조제4호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최	290
제16조제2항	금융전문대학원 설립·운영 지원	2,500
제17조제1항제1호	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조성 및 운영	1,251
제17조제1항제2호	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조성 및 운영	800
제17조제1항제3호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	4,910

※ 제18조(관리·운영의 위탁)는 현재 서울핀테크랩 운영사무를 케이액셀러레이터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중임

※ 제20조(표창)는 별도 부상 없이 표창장 수여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99,000천원(연평균 19,8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9,8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2021~2025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제17조제1항제1호(여의도 금융거점 서울사무소), 제2호(금융종사자 네트워크 허브), 제3호(서울핀테크랩) 등 3개 시설별로 10명(담당과장 1명, 민간위원 9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연 4회(정기 2회, 임시 2회) 개최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9,000천원(연평균 19,800천원)

- 총비용 = 3개 시설의 운영위원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운영위원회 운영 (제17조제4항)	19,800	19,800	19,800	19,800	19,800	99,000
	소계(b)	19,800	19,800	19,800	19,800	19,800	99,000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b-a)		19,800	19,800	19,800	19,800	19,800	99,000

○ 위원회 운영비용 : 참석수당 81,000천원+업무추진경비 18,000천원=99,000천원

- 참석수당 : 수당단가 150천원×9명×연 4회×3개 시설×5년=81,000천원

※ 참석수당 단가 : 「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

※ 지급인원 : 위원 10명 중 담당 과장(1명)은 제외

- 업무추진경비 : 경비단가 30천원×10명×연 4회×3개 시설×5년=18,000천원

※ 업무추진경비 단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에 따라 3만원 수준으로 적용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승우

조사분석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박주용

☎ 02-2180-7943

e-mail : pjoooyong@seoul.go.kr